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기 관 의 장
선 람	

**호외 2022. 1. 13(목)**

## 조 레

장수군 조례 제2559호  
 장수군 조례 제2560호  
 장수군 조례 제2561호  
 장수군 조례 제2562호  
 장수군 조례 제2563호  
 장수군 조례 제2564호  
 장수군 조례 제2565호  
 장수군 조례 제2566호  
 장수군 조례 제2567호  
 장수군 조례 제2568호  
 장수군 조례 제2569호  
 장수군 조례 제2570호  
 장수군 조례 제2571호  
 장수군 조례 제2572호  
 장수군 조례 제2573호  
 장수군 조례 제2574호  
 장수군 조례 제2575호  
 장수군 조례 제2576호  
 장수군 조례 제2577호  
 장수군 조례 제2578호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
장수군의회 시협수당 지급 조례	13
장수군 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장수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22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32
장수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장수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40
장수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42
장수군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48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장수군의회 포상 조례	63
장수군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장수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80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95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 규 칙

장수군 규칙 제1191호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5
----------------------------------	-----

회 람							
--------	--	--	--	--	--	--	--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6)

장수군 조례 제2559호

##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 ·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친절 · 공정하고 신속 ·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 숙직 ·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제13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원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연가 사용의 권장)**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의장에게 연가의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의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

**제16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③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④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는 제2호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2호의 휴가(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를 포함한다)는 제3호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⑧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호외

군

보

2022. 1. 13(목)

제1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 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염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 제3항 관련)

####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의정팀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직자의 행동률(제5조 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type="radio"/>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li><li><input type="radio"/>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li><li><input type="radio"/> 전화는 소속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li><li><input type="radio"/>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li><li><input type="radio"/>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li><li><input type="radio"/>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li><li><input type="radio"/>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반도록 처신한다.</li><li><input type="radio"/>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li><li><input type="radio"/>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type="radio"/> 시간을 엄수한다.</li><li><input type="radio"/> 어려운 동료를 돋는다.</li><li><input type="radio"/> 근검절약 한다.</li><li><input type="radio"/> 남에게 겸손 한다.</li><li><input type="radio"/>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li><li><input type="radio"/>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li><li><input type="radio"/>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li><li><input type="radio"/>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li><li><input type="radio"/>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li></ul>

[별표 4]

**당직수당 지급구분표(제7조 제4항 관련)**

구 분	단 위	지급액
일직비	1일당	60,000원
숙직비	1야당	60,000원

[별표 5]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3조 관련)****〈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6]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 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 직원의 임면 · 교육 · 훈련 · 복무 ·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장수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제1조)
- 공무원의 의무 (제3조 ~ 제6조)
- 공무원의 근무 및 복장 (제7조 ~ 제12조)
- 공무원의 연가 및 휴가 (제13조 ~ 제17조)
- 공무원의 국외여행 (제19조)

장수군 조례 제2560호

## 장수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장수군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장수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 직원의 임면 · 교육 · 훈련 · 복무 ·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장수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제1조)
- 시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제2조)
- 시험출장 여비에 관한 사항(제3조)

장수군 조례 제2561호

## **장수군 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수군 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4조 · 제45조 ·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3조 · 제54조 · 제56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65일이내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인용조문의 변경 (제1조)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회의 소집 요건 반영 (제3조)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안 발의 및 발의의원 정족수 규정 (제7조)

장수군 조례 제2562호

## 장수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수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를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문위원”을 “전문위원(5급을 “수석전문위원”, 6급을 “전문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수석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제5조(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아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중복 삭제 및 인용 조문의 변경 (제1조)
- 전문위원의 구분 및 전문위원의 권한 규정 (제4조)
-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규정 (제5조)

장수군 조례 제2563호

##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2년 1월 13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장수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장수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장수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장수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

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수군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 · 육아 ·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 ③ 의장은 장수군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 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지원
2.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
3. 우수공무원 및 소속 공무원의 국내 · 외 문화탐방
4. 정년 · 명예 퇴직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 · 외 연수
5.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 · 외 배낭연수
6.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각종 연찬회
7.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8. 직장 화합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한마음 단합대회
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11. 건강검진비(의료비 등) 지원
12.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체력단련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기능 · 구성 · 운영)**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 주민
  2.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협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협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협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협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위촉 해제)** 의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제척 · 기피 · 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통합운영)** 의장은 장수군수와 협의하여 후생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장수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제1조)
- 후생복지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제2조, 제3조)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제4조 ~ 제7조)
-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제8조 ~ 제13조)
- 운영의 위탁 및 통합운영 (제14조, 제15조)

장수군 조례 제2564호

##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장 수 군 수**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지방자치법」 제46조”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의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 범위 등)”을 “(적용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원”을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해서”를 “대하여”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윤리심사절차”를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로,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를 “「장수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을 각각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으로, 같은 항 중 “임·직원을 말한다”를 “임직원을 말하며, 의원이 그 직을 겸했을 경우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영리행위의 제한 및 신고)”를 “(영리행위의 제한 및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6조 제1항”을 각각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지 제15식”을 “별지 제15호의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조례”를 “이조례”로, “등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를 “등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심사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 및”을 “「지방자치법」 제99조 및”으로 한다.

호외

군

보

2022. 1. 13(목)

제24조제5항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한다.

제29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인용조문의 변경 (제1조, 제8조, 제23조)
- 「장수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제6조)
- 위반행위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자문 (제23조)
-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조항 삭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반영)
- 조례 정비 기준에 따른 띠어쓰기 및 오탈자 정비

장수군 조례 제2565호

##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별일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 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9」를 적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 직원의 임면 · 교육 · 훈련 · 복무 ·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장수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제1조)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
- 여비의 지급기준 및 운임 숙박비 규정 (제3조, 제4조)
-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
-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
- 공무원 아닌 사람의 여비 (제7조)

장수군 조례 제2566호

## **장수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수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장수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2조”를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로, “절차 기타”를 “절차,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위내에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를 “법위에서 실시 하되, 감사위원회”로,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지체없”을 각각 “지체 없”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으로,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출자 · 출연법인”을 “출자 · 출연기관”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2이상의”를 “다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한 까지”를 “기한까지”로, “500만원이하”를 “500만원 이하”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3제3항 전단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의하여 여비”를 “따라 여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사유없”을 “사유 없”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장수군의회회의 규칙”을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장수군의회위원회조례와 장수군의회회의규칙”을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의3)
- 조례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오탈자 정비

장수군 조례 제2567호

## **장수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 **장 수 군 수**

장수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수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를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제33조에”를 “제36조에”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한다.

제9조 중 “장수군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된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제1조)
- 기타 조례의 정비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등

장수군 조례 제2568호

## 장수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수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②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수군의회 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제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사업

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수군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균무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제1조)
- 조례의 용어 정의 (제2조)
- 기본원칙 (제3조)
- 지원범위 및 방법, 전문기관 지정 등 (제4조 ~ 제8조)
- 경비의 지급 등 (제9조)

장수군 조례 제2569호

## 장수군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 장 수 군 수

장수군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수군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장수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 및”을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 등급을”을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된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제1조)
- 지방자치단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제3조)

장수군 조례 제2570호

##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2년 1월 13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 ①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

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②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 까지 군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 ② 의장은 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 제정  
조례의 [ ] 개정 청구서  
[ ] 폐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신청 [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명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二〇一〇

신고인

### (서면 또는 날이)

장수군의회 의장

권한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장수군 ○○읍 · 면(○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방법

-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청구인명부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총층)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할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호외

군 보

2022. 1. 13(목)

■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의회 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 삼지] 80g/m<sup>2</sup>

## 1. 제정이유

- 주민의 조례에 관한 제정·개정·폐지에 대하여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2.01.13.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정함 (제2조)
-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 (제3조)
-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등의 서식과 그 방법을 규정 (제4조 ~ 제7조)
-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8조 ~ 제9조)
-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정에 관한 사항 (제10조 ~ 제11조)

장수군 조례 제2571호

##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2년 1월 13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를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56조”를 “『지방자치법』제64조”로 한다.

제7조 중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서”를 “국 · 부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행정복지국

제10조제2항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사목을 다목으로 한다.

- 가. 농산업건설국
- 나.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과수과)

제17조 중 “「장수군의회 회의규칙」”을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변경사항과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제1조)
-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하는 소관 실 □ 부서의 정리 (제10조)

장수군 조례 제2572호

## **장수군의회 포상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의회 포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포상권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권자는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 수를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광역·기초의회로 전출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연초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원, 의회 사무과장과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 사무과장, 전문

위원이 추천하며, 군민 20명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상의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업무 지침)** 의장은 포상에 관한 방법·절차 및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행한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의회 포상 규정은 폐지한다.

호외

군 보

2022. 1. 13(목)

■ 장수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20 ○○년 월 일

장수군의회의장 ○ ○ ○ (인)

호외

군 보

2022. 1. 13(목)

■ 장수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장문)

20 ○○년 월 일

장수군의회의장 ○ ○ ○ (인)

호외

군 보

2022. 1. 13(목)

■ 장수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20 ○○년 월 일

장수군의회의장 ○ ○ ○ (인)

호외

군 보

2022. 1. 13(목)

■ 장수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 상 여 금 증 서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위 사람은 20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장수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 금 원

20 년 월 일부터

지 급 기 간 :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장수군의회의장 ○ ○ ○ (인)

■ 장수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 포상후보자 추천서

포상명			
성명	한글 한자( )	성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근무처		직위	
근속연한	년 월 일부터	근속 년	
			사진

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명 인

주소

장수군의회의장 귀하

추천사유 :

구비서류 1. 공적조서(별지 제5호서식) 1부.

2. 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장수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6호서식]

### 공적조서

(앞쪽)

(1)성명	(한글) (한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소			
(7)직업	(8)소속		
(9)직급	(10)직위	(11)대외직명 *	
(12)공적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인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속	(18)직위		
(19)직급	(20)성명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호외

군 보

2022. 1. 13(목)

(뒤쪽)

#### ■ 장수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7호서식]

# 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 인적사항

성명 기관(단체)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 동의내용

위 본인(기관·단체)은 장수군의회의장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장수군의회 및 추천 기관·단체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기관·단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 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장수군의회의장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초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三

(피추천인 성명)

(서명)

장수군의회 의장 귀하

## ■ 장수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8호서식]

포상대장

##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장수군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 · 교육 · 훈련 · 복무 ·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장수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대상, 포상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제8조)
- 포상 방법 및 부상, 포상시기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제10조)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12조)
- 포상대상자 추천 및 이중포상금지에 관한 사항 (제13조, 제14조)
- 수상자명부 등재 및 포상업무지침 통보에 관한 사항 (제15조, 제16조)

장수군 조례 제2573호

## **장수군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장 수 군 수**

장수군의회에 출석 ·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 · 과장급”을 “국장, 실 · 과장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실 ·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을 “국장, 실 ·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으로, “2009.02.13 조례제1837호”를 “2009.02.13. 조례 제1837호”로 한다.

호외

군

보

2022. 1. 13(목)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 기관장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된 조문의 변경사항과,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장수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변경(안 제1조, 제2조)
- 기타 조례의 정비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등

장수군 조례 제2574호

## 장수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9조에 따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 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 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 ① 군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9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수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주소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되지 않음		
의견			
※ 취지와 이유, 근거 법령 및 조례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장수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20조('22.1.13 시행 예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 (제3조)
- 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
- 의견제출 방법 (제6조)
- 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 (제8조)
- 의견의 반영 (제9조)

장수군 조례 제2575호

##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장수군 관내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군노인복지관 : 장수군 장수읍 노하3길 16 일원
2. 장수군노인복지관 분관 : 장수군 장계면 백화로 6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 장수군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으로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 2. 주요내용

- 분관 명칭 및 위치 추가 (제2조)

호외

군

보

2022. 1. 13(목)

장수군 조례 제2576호

##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구분	기준	요 액	비고
<b>1. 일반행정관계</b>			
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	
나.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b>2. 재무행정관계</b>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자민원(인터넷)발급 시)	1건	800 (무료)	
나. 삭제			
다.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1주택당	800	
라.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주택당	800	
마.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500	
마.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	1통	500	
<b>금 보관확인원</b>			
사. 공유재산 대부계약 - 신규	1건	5,000	
-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	
<b>3. 건설관계</b>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	1,000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필지당	1,500	
나. 소하천 접용·사용 허가 신청	1건	1,000	
다.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1건	2,000	
라. 폐천부지 교환 신청	1건	1,000	
마.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1건	1,000	
마. 소하천 접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	

<b>4. 부동산관리관계</b>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기재발급분 포함)	1필지당	800	
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건	법인 30,000 개인 20,000	
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	
라. 중개사무소 등록증 제교부	1건	800	
마.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교부 신청	1건	800	
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제교부	1건	800	
사.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아. 건물번호판 제·교부 신청			
(1)일반용 길급	1건	7,000	
(2)일반용 대로,로급	1건	13,000	
(3)문화재 및 관공서용 길급	1건	8,000	
(4)문화재 및 관공서용 대로,로급	1건	17,000	
<b>5. 지역경제분야</b>			
가.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나. 석유판매업 등록			
- 주유소(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 용제판매소	1건	10,000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	
라.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마.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건	1,000	
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1건	20,000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1건	10,000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b>6. 의료관계</b>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	
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40,000	
마. 안경업소 개설 등록	1건	10,000	
바.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사.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아.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자.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	1건	20,000	
차.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b>7. 공중위생관계</b>			
가. 위생처리업			
(1)신규신고	1건	20,000	
(2)변경신고	1건	15,000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라. 삭제			
<b>8. 문화예술·체육관계</b>			
가. 체육시설업			
(1)등록신청	1건	30,000	
(2)변경신고	1건	10,000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입종			
(1)게임제작업 등록 신청	1건	20,000	
(2)게임배급업 등록 신청	1건	20,000	
(3)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	20,000	
(4)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5)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6)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7)복합유통개업제공업 신고	1건	20,000	
(8)개업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1건	5,000	
다. 공연장			
(1)등록 신청	1건	10,000	
(2)변경 등록 신청	1건	5,000	
라. 영화 및 비디어물에 관한 업종			
(1)영화업 신고	1건	20,000	
(2)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0,000	
(3)영화업 신고증 제교부 신청	1건	5,000	
(4)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	
(5)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6)비디오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	
(7)비디오물매급업 신고	1건	20,000	
(8)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9)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매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10)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1)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2)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	
(3)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	
(4)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 신청	1건	5,000	
(5)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1건	4,000	
제교부			
바. 관광진흥에 관한 업종			
(1)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60,000	
(2)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50,000	
(3)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	
(4)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	
(5)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종합유원시설업	1건	30,000	

제외) 신고 (6)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7)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5,000	
9. 농수산관계			
가.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1건	30,000	
나.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1건	30,000	
라.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	1건	10,000	
마. 낚시어선업 신고<신설>	1건	2,500	
바.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개정>	1건	9,000	
사.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	
아.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1건	5,000	
자.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차.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	
카. 내수면 유해어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타.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	
파. 관상어양식업 신고 <신설>	1건	1,000	
하. 양식산업에 관한 증명 <신설>			
(1) 양식업(해조류양식업,폐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면허신청	1건	5,000	
(2)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1건	9,000	
(3) 양식업면허증 제발급	1건	1,000	
(4)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 자의 선정·변경·지분 변경)신고	1건	1,000	
(5)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000	
(6) 양식업권 포기신고	1건	1,000	
(7)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1건	1,000	
(8)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9)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1건	4,000	

(10)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1건	2,500	
(11)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1건	3,000	
(12)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승인 신청	1건	1,000	
(13)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사항 변경신청	1건	1,000	
(14)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제발급	1건	1,000	
(15)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신청	1건	4,000	
(16) 양식업허가증의 제발급	1건	1,000	
(17)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	
(18) 양식업 변경신고	1건	1,500	
(19) 양식업 폐업신고	1건	800	
(20) 시험양식업 신청	1건	2,000	
(21)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	1건	3,000	
(22)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신청	1건	3,000	
(23) 보상청구	1건	2,000	
<b>10. 기타</b>			
가. 공부의 동·초본 교부	1건	500	
나.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500	
다. 사실증명 확인	1건	500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이 개정(2021.4.6.시행)됨에 따라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개별법령 제정에 따른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규정 정비 (별표1)
  - 종전「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하던 양식산업 면허신고 등을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동법에 이관함에 따른 관련 수수료 신설
- 징수 근거가 없는 수수료 등을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제외 (별표1)
  - 「소음·진동관리법」등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를 삭제

장수군 조례 제2577호

##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의 가설건축물이어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공원마을지구, 자연취락지구 및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을 “5호 이상의 자연마을 및 주거밀집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7미터이내로 설치하고,”를 “7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모듈과 모듈 사이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마을의주민”을 “마을의 주민”으로,

“개최”를 “개최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참석자명단 및 회의록 등을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목적 또는”을 “목적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수군에 거주하는 자(3년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만, 2년 이내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공원마을지구, 자연취락지구 및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경우 해당 마을주민(주민등록상 세대주)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20조의6제2항제2호 중 “자연취락지구, 공원마을지구”를 “5호 이상의 자연마을 및 주거밀집지역”으로 한다.

제6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연녹지 지역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70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7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전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립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시행령 제57조제1의2호의 행위 시 분과위원회 회

의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5 제1호아목 주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설치된 건축물의 총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지역 또는 자연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 150m 이내의 건축물 포함하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8호부터 22호까지, 25호, 26호, 28호는 제외)를 말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4]

## 개발행위허가기준 표고(제20조제1항제3호 관련)

읍면별	지역지구명	표고(m)	비 고
장수읍	도시지역	행정복지센터 기준 100m	장수읍행정복지센터 415미터
	대성리, 식천리, 덕산리, 수분리 외 비도시지역	행정복지센터 기준 150m	
	덕산리	행정복지센터 기준 200m	
	대성리	대성보건진료소 기준 73m	
	식천리	식천마을회관 기준 90m	
	수분리	송계마을회관 기준 90m	
산서면	신창리,하월리,사상리	면사무소기준 150m	산서면사무소 150미터
	이룡리	면사무소기준 150m	
	오산리,동화리,학선리,백운리, 전지리,봉서리	면사무소기준 150m	
	마하리,오성리,쌍계리,사계리	면사무소기준 160m	
번암면	국포리,죽산리,죽립리,노단리, 대론리,논곡리,유정리	면사무소기준 150m	번암면사무소 248미터
	교동리	금천마을회관기준 95m	금천마을회관 375미터
	지자리,사암리,동화리	번암면사무소 기준 200m	번암면사무소 248미터
장계면	도시지역	행정복지센터 기준 100m	장계면행정복지센터 357미터
	금곡리,금덕리,무농리,삼봉리, 송천리,월강리,명덕리	행정복지센터 기준 200m	
	오동리	원오동회관 기준 83m	
	대곡리	논개생가지관리사무소 기준 60m	
	봉덕리,삼고리,남양리,월곡리, 장판리,춘송리,비룡리	천천면사무소 기준 150m	천천면사무소 343미터
천천면	연평리	평지회관 기준 100m	평지회관 284미터
	오봉리,용광리	오봉보건진료소 기준 100m	오봉보건진료소 302미터
	침곡리, 호덕리 화양리,화음리,신전리	면사무소 기준 150m	계남면사무소 374미터
계남면	궁양리,가곡리,장안리	면사무소 기준 110m	원장안마을회관 456미터
	월현리,매계리,임평리	면사무소 기준 57m	계북면사무소 473미터
	원촌리	면사무소 기준 127m	
	농소리,어전리,양악리	면사무소 기준 150m	

[별표 25]

##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다.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

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  
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단, 「하천법」에 따  
른 지방하천 중 별표26의 하천은 제외한다.<개정 2009. 12. 31 조례 제  
1872호>

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는 제외한다.

###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 · 하천 · 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  
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란 하천 · 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4) 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여부를 판단  
적용하고 기존 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주무부서  
에서 판단해 적용한다.
- 5)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설  
치된 건축물의 총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지역 또는 자연취락지구(취락지  
구 경계 150m 이내의 건축물 포함하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8호부  
터 22호까지, 25호, 26호, 28호는 제외)를 말한다.

##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개정사항을 「장수군  
군계획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오류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가 입지기준 중 장수군에서 농업에 종사하  
는  
농업인을 장수군에 거주하는 자로 하고 군민이 일정거리 내에서  
발전시설 설치 시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도록 명시 (제20조의2 제2항)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명시 (제16조의3)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 건폐율  
완화 (제60조의3)
- 개발행위가 읍·면의 리별 표고 기준을 읍·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리 현황에 맞도록 기준 위치 및 높이를 조정하고,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를 명확화 (별표24, 별표25)

장수군 조례 제2578호

##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함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을 “함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생산자단체”이”를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조의2에 따른 특별 대환대출자 체납금의 상환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특별 대환대출) ① 군수는 금융권에서 대출 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상환액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환대출 할 수 있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이전 신청자에 한정한다.

1. 2000년 11월 이전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의 대상자 중 미상환자
  2. 장수군 경영회생사업의 미상환자
- ② 군수는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일 기준 미상환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  
를 포함한 미상환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중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제3조”를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 제2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 장수군 농촌소득금고 사업(2000년 11월 이전시기) 및 경영회생사업 미상환 농가 중 금융권에서 대출가능한 농가에 대하여 대환대출 제도로 상환기일을 연장함으로써 연체이자의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 금융권에서 대출가능한 미상환 농가에게 미상환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한 이자를 대환대출 할 수 있도록 함
- 대상자는 수탁금융기관과 지정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시기(2000년 11월)의 농촌소득사업과 경영회생사업의 미상환자로 한 함
- 신청기간은 2027년 1월 1일 이전으로 한정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미상환금액을 확정

장수군 규칙 제1191호

##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3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수군노인복지관”을 “장수군노인복지관 및 분관”으로, “다음 각 호”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1호 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8호 본문 중 “풍부함 사람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별지 제8호의”를 “별지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별지 제12호의”를 “별지 제12호”로 한다.

제18조 중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노인복지관 운영시설**

장수군노인복지관	장수군노인복지관 분관
사무실	사무실
상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휴게실
식당	식당
강당	강당
건강증진실	
취미활동실	

## 1. 개정이유

-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시설의 종류 본문 중 “장수군노인복지관”을 “장수군노인복지관 및 분관”으로, “다음 각 호”를 “별표 1”로 변경, 제1호~제11호 삭제, 별표 1 신설 (제2조)
- 조항 내용 변경 및 삭제, 신설 (제4조제3항제8호)
- 띠어쓰기 변경 (제7조제1항)
- “별표 1”을 “별표 2”로, “별지 제8호의”를 “별지 제8호”로, “별표 2”를 “별표 3”으로 변경 (제13조제1항~제2항)
- “별지 제12호의”를 “별지 제12호”로 변경 (제17조제2항)
-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제18조)

## **군보발행안내**

###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군보계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계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계재 의뢰 방법 : 계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